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(금융소비자연구실, 3775-9033)
작성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(금융소비자연구실, 3775-9033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8. 24(수) 14:30
배포 2022. 8. 24(수)
매수 총 6매

보험연구원, 「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」 세미나 개최

“초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적연금 자산의 활용 필요”

-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8월 24일(수) 오후 2시 『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』을 주제로 사적연금의 강화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함
 - 첫 번째(I) 세션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고,
 - 두 번째(II) 세션에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함
- (주제발표 I-1) :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려움을 지적함
 - (인구·경제 환경의 변화) 저출산·고령화의 가속화와 경제성장률 둔화
 - 합계출산율은 2021년 0.81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, 2060년에 평균 기대여명은 90.1세,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.8%로 전망됨
 - 경제성장률은 2030년대 1.3%, 2040년대 0.8%, 2050년대 0.5%로 예측됨(KDI 전망)

- **(재원조달의 어려움)**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재원조달은 쉽지 않음
 - 현재 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2.2%에 불과하나, 향후 급증하는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로 인해 2060년에 유럽연합(EU)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
 - 특히, 급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낮은 국민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4%로 추정되나, 현행 보험료율은 9%에 불과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임
- **(해외의 연금개혁)** 독일, 일본, 스웨덴 등은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함
 -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급여 축소, 보험료 인상, 수급연령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실시한 국가도 있고, 근본개혁을 통해 명목확정기여(NDC*)로 전환한 국가도 있음
 - * 연금 가입자의 소득, 예상수명, 납입기간의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
 - 그 결과, 재정안정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어졌으며, 이러한 연금개혁의 특징은 OECD 국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

○ **(주제발표 I-2) :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**은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·사 연금 간 연계 강화, 퇴직연금으로 일원화, 자동연금수급,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

- **(낮은 가입률과 유지율)** 퇴직연금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고, 이직 과정에서 대부분이 해지됨
 -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1.9%에 불과함
 - 퇴직연금은 이직 시 개인 IRP로 옮겨지고 나면 해지가 자유로워 2020년 IRP로 옮긴 사람의 98.2%가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함
- **(낮은 수익률, 금융시장에 민감)**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고, 실적배당형 선택 시에는 금융시장 민감도 높아 장기투자 유도가 쉽지 않음

- **(낮은 연금전환율)** 적립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는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
 - 2021년 현재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선택은 4.3%에 불과함
 - 현행 세제혜택 수준도 연금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세제 지원 수준이 OECD 평균(26%)보다 낮음(DB 17%, DC 14%)
- **(공·사연금 연계 강화 등)** 이러한 퇴직연금 문제를 보완하여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**공·사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**할 필요가 있음
 - **퇴직연금 활성화**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/연속성 강화, 자산운용여건 개선/수급권보호, 자동연금수급제도 도입, 세제지원 강화 등이 요구됨(<표 1> 참조)

〈표 1〉 공·사연금 연계강화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

구분		주요내용
공·사연금 연계 강화		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, 공·사연금 역할 분담 및 연계조정을 위해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
퇴직연금 활성화 방안	퇴직연금 일원화/연속성 강화	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
	자산운용여건 개선/수급권보호 강화	적극적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 효율화 필요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, 적립금 운용위원회 도입 등에 따른 자산운용시스템 변화에 대응하여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함
	자동연금수급제도 도입	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60세(정년연령과 연동)로 상향 조정 급여 시 자동으로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연금수급제도(예: 일본 일시금지급숙려제도*) 도입
	세제지원 강화	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지원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가입자 특성(면세자/소득수준, 주부, 퇴직자/연령 등)을 고려한 세제지원 차등화,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

○ **(주제발표 I-3) : 양혜경 건국대 교수**는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개인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

- **(주관적 기대수명 및 장수기대)** 분석결과 남녀 간에 주관적 기대수명 및 장수기대에 대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
 - 기대수명 추정에 있어 여성의 대부분은 과소추정, 남성의 대부분은 과대추정(특히 30대)됨
 - 2020년 기준 여성의 통계적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년 높으나 주관적 기대수명으

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오래 생존할 것으로 인식함

- **(성별·결혼 여부에 따른 연금 가입률)** 공적연금의 경우 성별 연금 격차가 결혼 여부에 따른 격차보다 두드러지나, 개인연금은 반대로 나타남
 - 공적연금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공적 연금 보유율이 높고,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공적연금 보유율이 높음
 - 개인연금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이 보유하며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많이 보유함
 - 기혼자 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유율이 높은 반면 미혼자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유율이 높음
- **(주관적 기대수명과 개인연금 가입 간의 관계)** 주관적 기대수명과 장수기대는 성별 및 결혼 여부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- 기혼 여성의 경우 주관적 기대수명 및 장수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낮아짐
 - 반면 기혼 남성의 경우 주관적 기대수명 및 장수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짐
- **(시사점)** 기혼 여성이 주관적 기대수명과 같은 사적정보를 연금 가입에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
 -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개인연금 보유율이 높은 것은 혼인으로 인한 요인, 즉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요인이 기혼 여성의 연금 가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는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, 여성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대수명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
 - 근본적으로 개인연금 선택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. 세제지원 은 해외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,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지 못함
 -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필요

○ (주제발표 II-1) : 이홍무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 사례가 한국 연금시장에서 사적 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함

- (기업수명 감소) 기업의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 기업 부실에 따른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음
 - 2021년 도산한 일본 기업의 평균수명은 23.8년(동경상공리서치)로, 제조업은 36.3년, 금융보험과 정보통신은 15.7년임
- (연금지급 보증제도) 기업연금의 지급보증제도(DB)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업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경우 일정범위에서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임
 - 미국 「제도종료보험」, 영국 「연금보증기금」, 캐나다 퀘벡주 「연금급부보증」 이 있음
 - 일본에서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기금을 대상으로 「지급보증사업」을 실시하였으나, 2013년의 후생연금기금의 개정에 관한 법개정 시 폐지됨
- (소비자보호 조치) 금융기관 파산 시 금융소비자보호 조치가 있음
 - 은행은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명당 1,000만 엔까지와 파산일까지의 이자 등임
 - 보험의 보상비율은 파산시점 책임준비금의 90% 수준임
 - 증권투자자 보호금액은 이용자의 금전과 유가증권의 가치(시가)를 합계하여 1인당 1,000만 엔을 상한으로 보상함
- (시사점) 사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 강화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○ (주제발표 II-2) :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퇴 가구의 주택 연금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(downsizing) 지분을 매각 하는 방식 등 주택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

- (주택의 연금화)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유형자산에 기초한 복지시스템(property-based welfare system)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주택의 연금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

- 주택의 연금화 방식은 크게 ‘역모기지 방식’과 ‘지분매각 방식’으로 구분됨 (<표 2>, 발표자료 p. 8 참조)

〈표 2〉 주요국의 주택 연금화 방식

	역모기지 방식	지분 매각 방식
정부 보증/정부 지원	미국의 HECM 한국의 주택연금 홍콩의 RMA	싱가포르의 LBS(Lease-Buyback Scheme)
민간 금융기관/투자기관	영국의 lifetime mortgage 유럽 여러 국가에서의 역모기지 호주, 뉴질랜드의 역모기지 캐나다의 역모기지	영국의 equity reversion 유럽 여러 국가에서의 지분매각 호주, 뉴질랜드의 equity reversion

- (주택자산 연금화의 걸림돌) 각국에서 주택자산 연금화의 걸림돌로 상속 동기,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,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, 자금공급자의 큰 위험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음
- (시사점) 주택 연금화를 위해서는 주택 규모 줄이기와 주택지분 매각 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함
 - 상속동기를 반영한 상품 개발(예 : 주택지분 중 일부가 반드시 남도록 상품 설계 - 뉴질랜드 사례)
 - 주택 이외의 자산도 연금화(예 :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연금 - 홍콩 사례)
 - 주택지분 매각을 Fintech와 연결(예 : 소액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택지분 매입 - 호주 사례)

첨부: 행사 발표자료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